○○○씨 인터넷족보 수보위원회 규약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【명칭】

본 회의 명칭은 ○○○씨 (인터넷)대동보 수보위원회라 칭한다.

제 2 조【위치】

본 회의 위치는 ○○○씨 전국종친회 사무실에 둔다.

제 3 조 【목적】

본 회의 목적은 충효정신을 계승하여 숭조효친사상을 선양·발전하며 종친간의 화합 단결 상부상조 후손들의 번영을 위하여 ○○○씨 대동보 편집 발간과 인터넷대동보구 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【사업】
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○○○씨 대동보 발간과 인터넷대동보 구축사업을 한다.

제2장 임 원

제 5 조【임원】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.

1. 고문 약간 명

2. 위원장 : 1인

3. 도유사 : 1인

4. 부위원장 약간 명

5. 총무 : 1인

6. 감사 : 3인

7. 편수감 : 1인

8. 편수위원 : 6명 내외

제 6 조【임원선출】

본 회의 임원은 제23회 ○○○씨 종친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.

- 1. 위원장, 부위원장, 도유사는 ○○○씨 전국종친회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수보위 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2. 총무, 편수감, 편수위원은 수보위원회 회장단에서 지명한다.
- 3. 감사는 수보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제 7 조【임원의 임기】

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보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체한다.

제 8 조 【책무】

본 회의 임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고문은 본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2.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는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3.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의 책무를 대행한다.
- 4. 도유사는 본회의 운영, 편집, 접수를 총괄한다.
- 5. 총무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본 회의 전반업무와 회계 그리고 수단접수를 담당한다.
- 6. 감사는 본 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결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7. 편수감은 본 보첩 편집을 총괄 편집한다.
- 8. 편수위원은 정서, 편집, 교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 9 조 【수단유사의 선출과 책무】

- 1. 수단유사의 선출은 각 문파에서 추천한 자를 수보위원회에서 지명한다.
- 2. 수단유사의 책무는 각 문파에 해당하는 보첩의 기초자료(수단)와 수단금 징수 및 보첩 신청 등을 책임진다.

제3장 회 의

제10조【회의】
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.

- 1. 정기총회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설정, 임원선출, 운영 등과 중간점검과 평가 그리고 결산총회 등을 개최한다.
- 2.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- 3. 임원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11조【결의】

본 회의 결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4 장 재 정

제12조【재정】

본 회의 재정은 한글판 인터넷족보 등재수단금과 보책보급대금으로 충당하고, 예산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한다.

- 1. 한글판 인터넷족보 등재 수단금: 1인당 10,000원(생존자는 출가한 여성 포함한 전종원. 사위 외손은 제외)
- 2. 보책대금: 필수보책 3권 120,000원+파보 권당 40,000원으로 하되 발간부수와 물 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- 3. 종사편 문헌록 수록비:건당 100.000원(84년 갑자대동보 수록자 제외)
- 4. 종사편 사진 수록비:건당 50,000원 (84년 갑자대동보 수록 분 제외)
- 5. 인터넷족보 사진 수록비: 건당 10,000원
- 6. 수단유사의 소요 거마비는 수단금의 10%로 한다.
- 7. 회계연도는 본 사업 종료일로 한다.

제 5 장 상 벌

제13조【포상】

본 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【벌칙】

본 사업의 왜곡된 행동이나 고의로 재정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변상조치하고 본 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사참여자격을 영원히 박탈한다.

【부 칙】

제 1 조 본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

제 2 조 본 회칙은 서기 2006년 6월 19일 제정 시행한다.

2007年 〇月 〇日

○○○씨 인터넷족보 수보위원회